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2022. 11. 23.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 · 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장 석 현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2 - 106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개정이유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설치와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도시관리국 사무분장 정비 (안 제2~제3조, 제8조)
- 나.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신설(안 제10조의 2)
- 다.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기존) 2023년 6월30일 → (변경) 2026년 6월30일(부칙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제125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0. 13. ~ 2022. 10. 24.)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추진단장' 및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추가하여 원도심활성화 전담 부서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안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국의 분장 중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추가하고 '수립 및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고도제한 완화'를 '수립'으로 수정함

- 안 제10조의2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 부서인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¹)을 부구청장 소속으로 신설함
- 부칙 제2조에서는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신청사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수정함
 (기존) 2023년 6월30일 → (변경) 2026년 6월30일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인 결과로 도출됨에 따라 화곡동, 등촌동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원도심 내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도심 균형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신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 도 심 활 성 화 추 진 단 장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개선 과제 발굴

미 래 전 략 기 획 팀

- 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

원 도 심 개 발 팀

- 정비계획 및 제도개선
- 도심공공복합사업 및 공공 재개발 등 공모
- 정비사업 추진 지원

모 아 타 운 팀

- 모아타운 제도개선 및 후보지 공모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 모아타운 정비사업 지원

고도제한완화추진팀

- 고도제한완화 민간지원
- 고도제한완화와 도시계획 연계 검토
-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¹⁾ 조직 구성(안)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 · 군 · 구 본청에 두는 실 · 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